

7. 國土建設綜合計劃法 施行令 改正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140號 1994. 5. 30

1. 개정이유

국토균형개발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」(법률 제4,722호, '94.1.7.공포)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「지역개발분과위원회」를 설치하여, 동 법률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을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「지역개발분과위원회」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개정내용

- 가. 지역개발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건설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경제기획원, 내무, 농림수산, 상공, 교통, 환경처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,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7인 이내를 포함한 1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.
- 나. 지역개발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, 의사정족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전화번호 및 주소
- 다. 기타 자세한 것은 건설부 국토계획과(500-28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